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30
------------	----

제출년월일 : 2002. 11. 30.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현 구청사가 협소하고 시설 노후로 구민불편이 가중되어 확장 신축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 되었으나 청사건립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예산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적립함으로써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안 제3조 제1항)
- 기금의 운용 관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안 제5조 제1항)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안 제6조)
- 회계관계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총무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 제8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 나. 예산조치 :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원 이상 기금 적립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에 총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부산광역시 보조금
3.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 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② 구청장은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시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 매입비
2. 청사 건축비
3. 기타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총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총무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부산광역시사하구재 무회계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